

서울특별시의회
제321회 정례회

서울특별시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3. 12.

서울특별시의회

김기덕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마포4)

-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.

- 본 의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본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 기본계획 수립 시
현 고립청년 실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
실태조사를 강화하고자, 기본계획에 사회적 고립청년
실태조사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고,

-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
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
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- 이에 안 제5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
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
같은 항에 제2호를 신설하여
‘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’에 대한 사항을
규정하였으며,

□ 안 제8조의 경우,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정책청년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, 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,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책 추진 상황 점검 및 사회적 고립청년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별도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.

□ 또한, 안 제14조의 경우,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시행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기관·법인 등에 대한 포상 조항을 규정하여 고립청년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,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